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      |            |
|------|------------|
| 등록번호 | 재무과-12713  |
| 등록일자 | 2015.5.12. |
| 결재일자 | 2015.5.12. |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     |      |      |      |           |               |
|-----|------|------|------|-----------|---------------|
| 주무관 | 지출팀장 | 재무과장 | 행정국장 | 부구청장 직무대리 | 구청장           |
| 권해주 | 김애영  | 代최성애 | 이창훈  | 주윤중       | 05/12<br>代주윤중 |
| 협조자 |      |      |      |           |               |

- 재정운영의 환류를 위한 -

## 2014회계연도 결산서(안) 보고

### I 추진개요

- 대상회계 : 총20개(일반회계1, 특별회계3, 기금16)
-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결산을 병행 실시하여 통합재정정보 제공

### II 결산개요

우리 구의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651,388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49,155백만원이고 지출액은 573,534백만원으로 차인잔액 175,621백만원은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055백만원과 사고이월 2,063백만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5,386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5,117백만원임.

재무제표에 의한 전년도 우리 구의 순자산이 5,375,63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52,76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 운영차액은 전년 대비 8,012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수증대와 지출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수익이 점차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2015. 5. .

강 남 구  
( 재 무 과 )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 검토분야                           | 확인 및 적시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 규정 및 근거                     | <p>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제51조~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63조</li> <li>•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제84조</li> <li>•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li> <li>•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 및 31조</li> <li>•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li> </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진 경위                          | <p>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경위 : 2014회계연도 결산 추진 계획(재무과-3803,2015.2.10)</li> </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산 사항                          | <p>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li> <li>•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li> </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혜자 및 범위                       | <p>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공무원, 일반주민</li> </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검토사항<br>(계속 : )<br>(신규 : ) | <p>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60%;">① 관련부서 협조</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 )</td> </tr> <tr> <td>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④ 미래행정 수요예측</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⑤ 시장조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0 )</td> </tr> <tr> <td>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able> <p>•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p> | ① 관련부서 협조 | -----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 ) | ⑤ 시장조사 | ----- |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0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 |
| ① 관련부서 협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시장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타 기관 사례                        | <p>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자치구 추진 중</li> </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가문                           | <p>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4회계연도 결산서(안) 보고

2014회계연도 결산서(안)을 지방재정법 제51조·제5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정확히 작성함으로써 구의회 결산검사 및 결산심의에 대비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환류(feed-back)에 기여 하고자 함.

### I 개 요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51조~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 제63조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 제84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 및 제31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 2014회계연도 결산 추진 계획(재무과-3803, 2015. 2. 10.)

**기 간 : 2014. 10. 14. ~ 5. 10.**

**대 상 : 일반회계 1, 특별회계 3, 기금회계 16(총 20개 회계)**

**추진사항**

| 일 정                      | 내 용                                                                                     | 비 고 |
|--------------------------|-----------------------------------------------------------------------------------------|-----|
| 2014.10.14 ~ 2015. 2.28. | 보조금(국·시), 회계별 세출 자료 등 정비<br>- 자금일계표에 의거 구금고 잔액과 일치 여부 조회<br>- 수정자료 보완을 위한 집행부서 검증 작업 실시 |     |
| 2015. 2. 10.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추진계획 수립                                                                |     |
| 2015. 2. 25.             | 전부서 회계담당 교육<br>- 2014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기준 및 작성방법 안내                                           |     |
| ~ 2015. 5. 10.           | 결산서(안) 작성                                                                               |     |

## □ 결산서 구성

### 2014 회계연도 결산서

| 인 사 말                                                                                                                                                                                                                                                                                                                                                                                                                                                         | 결 산 서 첨 부 서 류 (26종)                                                                                                                                                                                                                                                                                                                        |                                                                                                                                                                                                                                                                     |
|---------------------------------------------------------------------------------------------------------------------------------------------------------------------------------------------------------------------------------------------------------------------------------------------------------------------------------------------------------------------------------------------------------------------------------------------------------------|--------------------------------------------------------------------------------------------------------------------------------------------------------------------------------------------------------------------------------------------------------------------------------------------------------------------------------------------|---------------------------------------------------------------------------------------------------------------------------------------------------------------------------------------------------------------------------------------------------------------------|
| <p>I. 결산개요</p> <hr/> <p>II. 세입·세출결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li> <li>- 세입결산</li> <li>- 세출결산</li> <li>-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조서</li> <li>- 예비비 지출</li> <li>- 채무부담행위</li> </ul> <p>※ 일반·특별회계구분 작성</p> <hr/> <p>III. 재무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제표 총괄설명</li> <li>- 재무제표<br/>(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li> <li>- 필수보충정보 5종</li> <li>- 부속명세서 5종</li> <li>- 첨부서류 2종</li> </ul> <hr/> <p>IV. 성과보고서(작성 유예)</p> | <p>① 결산수지상황 총괄</p> <p>②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p> <p>③ 전년도 결산대비</p> <p>④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p> <p>⑤ 세입세출결산 회계별 규모(전년대비)</p> <p>⑥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p> <p>⑦ 세입금 다음연도이월액 사유별 현황</p> <p>⑧ 세입금 과오납 현황</p> <p>⑨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p> <p>⑩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p> <p>⑪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p> <p>⑫ 주요사업 추진현황</p> <p>⑬ 세입세출외 현금현재액</p> <p>⑭ 지방채 발행 보고서</p> <p>⑮ 보증채무현재액</p> | <p>⑯ 계속비 결산명세서</p> <p>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p> <p>⑱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p> <p>⑲ 기금결산보고서</p> <p>⑳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p> <p>㉑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p> <p>㉒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p> <p>㉓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p> <p>㉔ 지방세 지출보고서(실적기준)</p> <p>㉕ 성인지결산서</p> <p>㉖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작성유예)</p> |

II

**결산서(안) 내역**

**1. 세입·세출 결산**

**세입·세출 처리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 예산현액    | 세입<br>결산액① | 세출<br>결산액② | 차 인 잔 액<br>(세계잉여금)<br>③=①-② | 다음연도 이월내역 ④ |             |                     |
|------|---------|------------|------------|-----------------------------|-------------|-------------|---------------------|
|      |         |            |            |                             | 이월<br>사업비   | 보조금<br>사용잔액 | 순세계<br>잉여금<br>⑤=③-④ |
| 합 계  | 651,388 | 749,155    | 573,534    | 175,621                     | 5,118       | 5,386       | 165,117             |
| 일반회계 | 611,357 | 674,856    | 550,221    | 124,635                     | 5,118       | 5,359       | 114,158             |
| 특별회계 | 40,030  | 74,299     | 23,313     | 50,986                      | 0           | 26          | 50,960              |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및 순세계잉여금 추세**

(단위 : 원)

| 회계구분         |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br>(실제수납액) | 세출결산액<br>(지출액)  | 세계잉여금           | 이월사업비          | 보조금<br>사용잔액   | 순세계<br>잉여금      |
|--------------|-----------------|------------------|-----------------|-----------------|----------------|---------------|-----------------|
| 2014회계<br>연도 | 651,387,610,130 | 749,155,411,741  | 573,534,028,631 | 175,621,383,110 | 5,118,466,610  | 5,385,805,286 | 165,117,111,214 |
| 2013회계<br>연도 | 611,356,618,800 | 682,809,641,452  | 533,640,280,700 | 149,169,360,752 | 6,272,097,130  | 4,500,777,477 | 138,396,486,145 |
| 2012회계<br>연도 | 623,053,745,390 | 659,972,862,664  | 543,158,295,034 | 116,814,567,630 | 10,428,648,800 | 3,157,361,337 | 103,228,557,493 |
| 2011회계<br>연도 | 604,344,437,178 | 617,567,832,931  | 495,923,333,135 | 121,644,499,796 | 21,073,510,390 | 4,448,285,910 | 96,122,703,496  |
| 2010회계<br>연도 | 671,071,488,836 | 673,656,850,845  | 556,636,400,167 | 117,020,450,678 | 34,681,529,178 | 2,554,157,778 | 79,784,763,722  |

※ 예산현액 대비 당해 연도에 88.05%(전년도 87.29%)를 집행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당해 연도 175,621,383,110원으로 전년도 149,169,360,752원 대비 17.73%가 증가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은 19.31%가 증가되었음.

(단위 : 백만원)

800,000  
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2010회계연도  
회계

2011회계연도  
회계

2012회계연도  
회계

2013회계연도  
회계

2014회계연도  
회계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순세계잉여금

## □ 세입 처리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br>㉠ | 실제수납액<br>㉡ | 수납율<br>(㉡/㉠) | 미수납액(㉠-㉡) |             |        |
|--------------|---------|------------|------------|--------------|-----------|-------------|--------|
|              |         |            |            |              | 결손처분액     | 다음연도<br>이월액 |        |
| 합 계          | 651,388 | 911,789    | 749,155    | 82%          | 3,419     | 159,214     |        |
| 일반회계         | 611,357 | 777,075    | 674,856    | 87%          | 2,493     | 99,726      |        |
| 특별<br>회<br>계 | 계       | 40,030     | 134,714    | 74,299       | 55%       | 926         | 59,489 |
|              | 주차장     | 33,227     | 127,272    | 67,222       | 53%       | 926         | 59,123 |
|              | 의료급여    | 722,967    | 1,091      | 726          | 67%       | 0           | 365    |
|              | 기반시설    | 6,080      | 6,351      | 6,351        | 100%      | 0           | 0      |

☞ 실제 수납액(결산액) 749,155백만원은 예산현액의 115%로 97,767백만원이 초과 세입되었으며 수납율은 82%임.

## □ 과목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 계       |      |             | 일반회계    |      |             | 특별회계   |      |             |
|-------------------|---------|------|-------------|---------|------|-------------|--------|------|-------------|
|                   | 2014    | 비율   | 전년<br>대비(%) | 2014    | 비율   | 전년<br>대비(%) | 2014   | 비율   | 전년<br>대비(%) |
| 계                 | 749,155 | 100% | 109.72      | 674,856 | 100% | 109.09      | 74,299 | 100% | 115.78      |
| 자체수입              | 408,034 | 54%  | 77.74       | 370,508 | 55%  | 80.29       | 37,526 | 51%  | 59.16       |
| 지방세               | 268,018 | 36%  | 101.9       | 268,018 | 40%  | 101.9       | 0      | 0%   | 0           |
| 세외수입              | 140,016 | 19%  | 53.47       | 102,490 | 15%  | 51.65       | 37,526 | 51%  | 59.16       |
| 이전수입              | 190,752 | 25%  | 120.79      | 189,973 | 28%  | 120.86      | 779    | 1%   | 105.85      |
| 지방교부세             | 5,182   | 1%   | 68.05       | 5,182   | 1%   | 68.05       | 0      | 0%   | 0           |
| 조정교부금 및<br>재정보전금  | 5,099   | 1%   | 64.07       | 5,099   | 1%   | 64.07       | 0      | 0%   | 0           |
| 보조금               | 180,471 | 24%  | 126.78      | 179,692 | 27%  | 126.89      | 779    | 1%   | 105.85      |
| 지방채 및 예치금<br>회수 등 | 150,369 | 20%  | 0           | 114,375 | 17%  | 0           | 35,994 | 48%  | 0           |

※ 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 등이 세외수입항목에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과목 구분이 변경됨.

<근거 :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총 749,155백만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54%와 25%임.

☞ 2014회계연도 세입은 749,15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6,345백만원(109.72%)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세와 보조금임.

☞ 2014년도 지방세 세입은 268,01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994백만원(101.9%)이 증가하였으며, 세곡동 대규모 개발 등으로 재산세 세입이 전년대비 7,853백만원(103.9%)증가 및 지난년도 수입이 전년대비 718백만원(126.7%)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임.

## □ 세출 처리 현황

(단위 : 원)

| 회계별  | 예산현액<br>①       | 지출액<br>②        | 집행율<br>(㉔/㉕)   | 다음연도<br>이월액③  | 집행잔액<br>①-②-③  |                |
|------|-----------------|-----------------|----------------|---------------|----------------|----------------|
| 합 계  | 651,387,610,130 | 573,534,028,631 | 88 %           | 5,118,466,610 | 72,735,114,889 |                |
| 일반회계 | 611,357,321,130 | 550,221,039,231 | 90 %           | 5,118,466,610 | 56,017,815,289 |                |
| 특별회계 | 계               | 40,030,289,000  | 23,312,989,400 | 58 %          | 0              | 16,717,299,600 |
|      | 주차장             | 33,227,207,000  | 18,331,236,670 | 55 %          | 0              | 14,895,970,330 |
|      | 의료급여            | 722,967,000     | 667,242,090    | 92 %          | 0              | 55,724,910     |
|      | 기반시설            | 6,080,115,000   | 4,314,510,640  | 71 %          | 0              | 1,765,604,360  |

## □ 분야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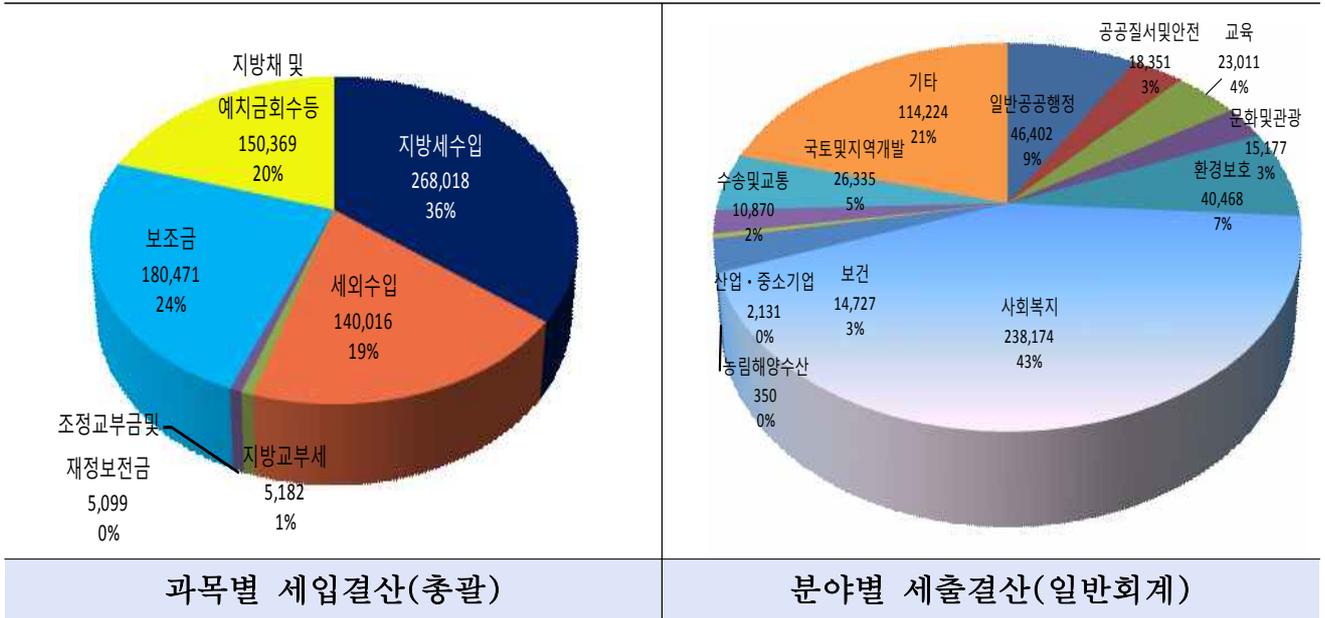
| 구 분     |                    | 2012    | 2013    | 전년대비(%) | 2014    | 전년대비(%) |
|---------|--------------------|---------|---------|---------|---------|---------|
| 계       |                    | 543,158 | 533,640 | 98.25   | 573,534 | 107.48  |
| 일반회계    | 2014회계연도<br>분야별 비율 | 502,124 | 504,264 | 100.43  | 550,221 | 109.11  |
| 일반공공행정  | 8.4%               | 67,210  | 43,672  | 64.98   | 46,402  | 106.25  |
| 공공질서및안전 | 3.3%               | 19,696  | 19,185  | 97.41   | 18,351  | 95.65   |
| 교육      | 4.2%               | 24,085  | 25,494  | 105.85  | 23,011  | 90.26   |
| 문화및관광   | 2.8%               | 16,063  | 16,476  | 102.57  | 15,177  | 92.12   |
| 환경보호    | 7.4%               | 39,406  | 39,809  | 101.02  | 40,468  | 101.66  |
| 사회복지    | 43.3%              | 173,361 | 202,826 | 117     | 238,174 | 117.43  |
| 보건      | 2.7%               | 10,728  | 14,864  | 138.55  | 14,727  | 99.08   |
| 농림해양수산  | 0.1%               | 408     | 467     | 114.48  | 350     | 74.89   |
| 산업·중소기업 | 0.4%               | 2,970   | 2,302   | 77.49   | 2,131   | 92.6    |
| 수송및교통   | 2.0%               | 10,099  | 15,265  | 151.15  | 10,870  | 71.21   |
| 국토및지역개발 | 4.8%               | 21,133  | 15,813  | 74.82   | 26,335  | 166.54  |
| 기타      | 20.8%              | 116,965 | 108,091 | 92.41   | 114,224 | 105.67  |
| 특별회계    |                    | 41,034  | 29,376  | 71.59   | 23,313  | 79.36   |
| 기타특별회계  |                    | 41,034  | 29,376  | 71.59   | 23,313  | 79.36   |

- ☞ 세출은 573,53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9,894백만원(107.48%)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238,174백만원(43.3%), 기타 114,224백만원(20.8%) 및 일반공공행정 46,402백만원(8.4%)임.
- ☞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166.54%), 사회복지(117.43%)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민숙원사업인 노후 이면도로 및 보도 정비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6,620백만원 증가 및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등으로 전년 대비 2,287백만원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강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으로 전년대비 3,078백만원 증가 및 기초연금 지급이 전년 대비 11,506백만원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임.

### □ 도표로 보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 2014 회계연도 | 2013 회계연도 | 2012 회계연도 | 2011 회계연도 | 2010 회계연도 |
|-------|-----------|-----------|-----------|-----------|-----------|
| 예산전용  | 건수        | 52        | 55        | 66        | 97        |
|       | 금액        | 2,286     | 3,739     | 1,666     | 2,455     |
| 예비비지출 | 건수        | 11        | 6         | 12        | 31        |
|       | 금액        | 1,994     | 902       | 4,282     | 3,779     |
| 이월사업비 | 건수        | 20        | 12        | 25        | 26        |
|       | 금액        | 5,118     | 6,360     | 10,428    | 21,073    |

☞ 세출예산 전용액은 2,286백만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과 간판개선 사업 추진, 관광진흥과 한류스타거리 2차 조성 및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 위탁 사업 비용임.

☞ 예비비는 주차장건설 민간투자사업(소송) 사업등 11건 2,306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994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13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이월사업비는 한류스타거리 2차 조성 사업등 20건인 5,118백만원을 이월함.

## 2. 재무제표

### □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 재정상태      |        |           | 재정운영    |         |        | 비 고 |
|-------|-----------|--------|-----------|---------|---------|--------|-----|
|       | 총자산       | 총부채    | 순자산       | 총수익     | 총비용     | 운영차액   |     |
| 2014년 | 5,462,014 | 86,380 | 5,375,634 | 617,715 | 603,652 | 14,063 |     |
| 2013년 | 4,967,361 | 44,495 | 4,922,866 | 579,104 | 557,029 | 22,075 |     |
| 증감    | 494,653   | 41,885 | 452,768   | 38,611  | 46,623  | △8,012 |     |

☞ 2014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452,768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9.2%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 대비 8,012백만원(36.29%) 감소

## 3. 결산서 첨부서류

### □ 기금결산 보고서

(단위 : 원)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수납액       | 당해연도 지출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
|-----------------|----------------|----------------|-----------------|
| 213,847,063,611 | 29,918,651,705 | 18,076,555,210 | 225,689,160,106 |

☞ 2014회계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11,842,096,495원(5.54%) 증가  
 ☞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과년도분을 포함한 원인자부담금 약82억 조성 등 기금별 기타 수입 증가 및 이자수입 증가

###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원)

| 전년도말 현재액 |                   | 당해연도 증가액 |                 | 당해연도 감소액 |                | 당해연도말 현재액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59,809   | 3,684,360,998,114 | 148      | 513,429,172,610 | 84       | 16,638,011,404 | 59,873    | 4,181,152,159,320 |

☞ 2014회계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496,791,161,206원(13.48%) 증가  
 ☞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사업 및 세곡지구시프트사업에 따른 토지무상귀속에 기인함.

## □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원)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가액      | 당해연도 감소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
|---------------|---------------|---------------|---------------|
| 9,443,537,625 | 2,040,611,705 | 1,776,224,085 | 7,738,372,991 |

- ☞ 2014회계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1,705,164,634원(18.06%) 감소
- ☞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정수물품 변경으로 고가인 컴퓨터 서버 등이 제외됨에 기인함.

## □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단위 : 원)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가액       | 당해연도 감소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
|----------------|----------------|----------------|----------------|
| 12,252,382,642 | 18,158,227,310 | 17,269,897,245 | 13,140,712,707 |

- ☞ 2014회계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888,330,065원(7.25%) 증가

## □ 채권 현재액

(단위 : 원)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발생액       | 당해연도 소멸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
|----------------|----------------|----------------|----------------|
| 29,774,775,400 | 10,073,695,682 | 11,606,186,192 | 28,242,284,890 |

- ☞ 2014회계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1,532,490,510원(5.15%) 감소

## Ⅲ

### 향후계획

#### □ 결산검사

- 기 간 : 2015. 5. 14 ~ 6. 12(30일간)
- 장 소 : 본관4층 회의실
- 위 원 : 5명(구의원 1, 공인회계사 4)
- 주요내용
  - 계산의 과오여부
  -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심사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출**

- 2015. 6월 강남구의회 제출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 일 정 : 제1차 정례회의 시(2015.7월 예정)
- 방 법 : 상임위원회 심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 본회의 승인

□ **결산 공개**

- 서울시 보고 : 의회 승인을 얻은 후 5일 이내
- 홈페이지고시 : 의회 승인을 얻은 후 30일 이내

□ **지출자료 정비**

- 기 간 : 2015년 9월~
- 대 상 : 전부서
- 내 용 :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5회계연도부터 12월말로 출납이 폐쇄됨에 따라 사전 지출자료 정비

**첨부 : 2014회계연도 결산서(안)1부.**

# 관 련 법 규

## ○ 지방재정법 제51조~제53조

제51조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회에게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 가. 재정상태표
  - 나. 재정운영표
  -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③ 결산업무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제51조의2 (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51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명세서
2.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3. 이월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4. 성인지 결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6. 국고보조금 또는 시·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9.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2. 유형자산명세서
3. 감가상각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

제52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2.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53조 (지방회계기준과 재무제표)

- 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명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의 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되, 지방재정의 상태와 운용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11.29]]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 중 필요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11.29]]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에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무제표 및 검토의견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본조제목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제53조의2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그 밖에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시행일 2011.9.9]]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제63조

제59조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② 삭제 [2014.11.28]

③ 삭제 [2014.11.28]

④ 삭제 [2014.11.28]

[본조제목개정 2014.11.28]

제59조의2 (결산서의 작성)

①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의 집행 결과, 제정의 운영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세입·세출결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 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세출예산 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집행잔액

③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법 제5조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결산의 절차와 방법, 결산서의 종류 등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구체적인 작성사항과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59조의3 (결산서의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그 계속비 연부액(年賦額)의 마지막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채무관리보고서
2. 채권현재액보고서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4.11.28]

#### 제60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

#### 제61조 (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는 제 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 제62조 (지방회계기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방회계기준에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보고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28]

1. 자산·부채·순자산의 인식
2. 수익과 비용의 인식
3. 자산과 부채의 평가
4.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5. 재무제표의 양식
6. 그 밖에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의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의 재무제표에는 주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28]

[본조제목개정 2014.11.28]

#### 제62조의2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의 위탁)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 또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회계 및 재정분석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국내·외 지방회계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2.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3. 지방회계기준 개선을 위한 법 제51조에 따른 결산서 및 결산서의 분석에 관한 업무
4.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지방회계기준 등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14.11.28]

#### 제62조의3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관서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회계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회계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회계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대학에서 회계학 또는 재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4.11.28]

#### 제63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 ①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에는 검토의 대상과 기준,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28]
- ② 그 밖에 검토의견의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3조의2 (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 ① 법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본조신설 2011.9.6]

#### 부 칙[2014.11.28 제25781호]

제3조(출납폐쇄기한 조정에 따른 출납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2014회계연도 및 이전 회계연도의 출납사무에 대해서는 제2조제4호, 제3조제6호 단서, 제4조 단서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34조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시행일 2011.10.1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 제84조

제82조 (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83조 (감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 (결산 검사 사항)

① 감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 및 제31조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무관리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작성한다.<개정 95·4·29><개정 2012.02.17>

② 재무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3.27>

③ 재무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6·2><개정 2015.3.27>

④ 결산서는 영 제59조의2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 서류는 영 제59조의3에 따른다. <개정 98·7·10, 2008.01.18, 2008.09.05><개정 2013.5.31><개정 2015.3.27>

⑤ 구청장은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1.18>

제30조의2< 삭제 2015.3.27>

제31조(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관리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2.17>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정수) 결산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

제3조(선임방법 및 자격)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09.12.18>

②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09.12.18>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할 경험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

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개정 2009.12.18>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회계 또는 재무관리분야에 3년 이상 경험자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개정 2009.12.18>

3. 공인 회계사

4. 지방의회의원 경력자 중 결산검사위원으로 경력이 있었던 자. <개정 2009.12.18>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9.12.18>

제4조(대표의원) ① 검사위원 중에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② 대표의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의 사항을 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작성하는 결산서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검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개정 2009.12.18>

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 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 이내의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③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감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위원이 연서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9.12.18>

④ 결산검사 업무는 감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검사위원의 신분은 의회에서 결산이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의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하며 사무실과 보조인원을 충분히 지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7조(검사위원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개정 2009.12.18>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09.12.18>

2.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 중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09.12.18>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2. 의회가 부적격자로 인정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음이 확인 된 때 <개정 2009.12.18>

4. 구청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때

③ 의회는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위원의 재개) 검사위원이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향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

제9조(실비보상)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보상하되 결산검사 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비는 국내여비지급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18>

②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③ 감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때에는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12.18>